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매뉴얼



인사말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핵심 절차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의료인의 경험과 전문성은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에,
본 시범사업은 정책실험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인증체계의 운영방식, 진단서 양식,
질병별 가이드라인 내용 등은 모두 연구내용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추후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본 제도의 운영방안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I.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	---

II-1.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내용(공통)	5
---------------------------	---

II-2. 상병수당 2·3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소득기준	9
------------------------------------	---

III. 의료인증체계 개요 및 의료기관의 역할	10
---------------------------	----

IV.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등록	12
-------------------------	----



V. 최초 신청용 진단서 작성 방법 13

VI. 연장 신청용 진단서 작성 방법 23

VII. 질병별 가이드라인 개요 28

참고자료 목록 _ 참고 31



| 상병수당 제도 개요

① 제도의 취지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증,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
 - * 중앙일보('20.6.3), 163개국 질병수당, 한국엔 없어...부천 확진자 37% 아파도 출근
-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Q. 상병수당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 ✓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근로자(환자)
- ✓ 아픈데도 무리하게 일을 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근로자(환자)
- ✓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환자)

② 국제 동향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 ISSA(국제사회보장기구)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 미도입국 : 한국, 미국(일부 주), 마셜제도, 팔라우, 가나, 세네갈, 모리타니 등
- ILO(국제노동기구)에서 1969년 ‘상병급여협약’ 통해 국제적 기준 제시
 - ①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②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③근로능력상실 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 ④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⑤대기기간 설정 가능

③ 국내 추진 경과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로 논의 시작
- 관계부처·노동계·경영계·전문가 포함 제도기획자문위원회('21.4~12)
-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21년, 보사연)
-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 발표('22.1.19)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 ('22.7~)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3.7~)
- 상병수당 3단계 추진계획 발표('24.1) 및 4개 지역* 선정('24.4)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II-1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내용 (공통)

① 시범사업의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
 -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 확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 1단계 시범사업('22.7~)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 2단계('23.7~) 및 3단계('24.7~) 시범사업은 신청자격 소득 하위 50%로 제한

② 사업 개요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2. 7월~	2023. 7월 ~	2024. 7월 ~
대상 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	4개 시·군·구에 1개 모형 적용
적용 모형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모형6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제도 설계) – 국민 건강보험공단(집행) – 지자체(협조)		

③ 지원 대상

기본 자격 * * 2·3단계 지역은 기본자격에 소득요건 추가 (9페이지 참고)

- | **거주지**
 - ① 시범사업 지역내 거주자(주민등록기준)
 - ②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 **국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 단,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 :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자격 유지
 - * 일용근로자(혹은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중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 충족
 -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월평균* 매출이 206만원 이상
 -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

4 질병·부상 요건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해당 지역	서울 종로, 대구 달서, 경기 부천·안양, 충북 충주, 충남 천안·홍성,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강원 원주	경기 용인, 전북 익산, 전남 순천, 경남 창원
입원 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진단서 발급여부	필요	불필요

-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각 모형별 대기기간 차감 후 최대 보장기간 내 지급*

* 예) 대기기간이 7일인 경우,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근로활동불가일수에서 대기기간 차감 후 해당 일수에 대해 지급

참고 | 근로활동불가기간이란?

-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료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 (입·내원일수)와는 다른 개념
 - * 예) 수술 당일 포함 3일간 입원하고, 7일간 재택에서 요양하며 근로를 못한 경우
→ 근로활동불가기간은 수술일로부터 근로복귀일까지 10일
- 상병의 특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직업·업무 특성, 근로활동 시 업무 강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필요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입원 관련 상병으로 인한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각 모형별 대기기간 차감 후 최대 보장기간 내 지급*

* 예) 대기기간이 3일인 경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입원 관련 상병으로 인한 외래 진료 (주당 최대 2회 인정)일수에 대해 대기기간 차감 후 해당 일수에 대해 지급

5 지원 내용

지급 금액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각 모형별 ①대기기간 일수를 차감한 후
②최대 보장기간 일수 내에서 지급*

* 예) 대기기간이 7일인 지역의 회사원 A씨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28일) - 대기기간(7일) = 급여지급일수 21일 → 21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 ① (대기기간) 상병 발생 시점과 급여 수급권 발생 시점간의 차이
- ② (최대보장기간)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모형	1단계			2단계		3단계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근로활동불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대상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7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50일	150일

* 1, 2단계 지역의 변경된 최대보장기간은 '24년 7월부터 적용

6 지원절차 (근로활동불가모형 해당 지역 신청인 관점)

1단계(부천, 포항, 서울 종로, 천안)



2·3단계(대구 달서, 안양,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환자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방문, 의료기관에 비치된 사전문답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
 - * 사전문답서는 환자가 회수하여 건보공단에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는 의료기관에 제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관련 의무기록 발급**
 - *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산 제출

- **구비서류 준비**

- 사전문답서, 의무기록지, 취업자 유형별 증빙서류 등

- **상병수당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 예외적으로 가족 등의 대리인이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상병인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과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함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범지역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신청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 (자격심사) 취업자 여부, 지원제외자 여부 등
- (소득심사*) 신청인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 심사
 - * 소득심사는 2·3단계 지역만 해당
- (의료인증심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상병수당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심사결과가 통보된 후 신청인은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중단확인서를 공단에 제출 (사업주/소득지급처 등 작성)

- **상병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 * 최종급여일수 \times 47,56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최초 신청은 100%, 연장 신청은 50% 환급)

II-2 상병수당 2·3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소득기준 추가

1 목적

- 2·3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제도 도입 전 다양한 모델 검증

2 개요

	2단계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3. 7월~	2024. 7월~
대상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 * 모형별 2개 지역 운영 – (근로활동불가모형) 경기 안양, 대구 달서 – (의료이용일수모형) 경기 용인, 전북 익산	4개 시·군·구에 1개 모형 적용 – (근로활동불가모형)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제도 설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집행) – 지자체(협조)	

3 2·3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본 자격·취업자 자격은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며, 여기에 소득기준 추가
 - (소득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참고 | 2024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675,000원	95,183원 이하	24,266원 이하	–
2인	4,420,000원	157,035원 이하	109,680원 이하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202,377원 이하	152,948원 이하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247,170원 이하	205,217원 이하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289,638원 이하	254,448원 이하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324,452원 이하	291,356원 이하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377,299원 이하	351,294원 이하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422,318원 이하	400,222원 이하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453,848원 이하	433,430원 이하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498,289원 이하	478,514원 이하	543,979원 이하

- 그 외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1단계와 동일 (II-1 참조) -

III 의료인증체계 개요 및 의료기관의 역할

①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의료인증체계 개요

- (1단계) 의료기관 진단

- 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의학적·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작성, 최초 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28일)*까지만 작성 가능

* 필요 시 연장 신청, 연장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은 8주(56일)까지 작성 가능

-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 본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최종 심사, 상병수당 지급 여부 및 기간 결정

*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학회별로 추천받아 자문의사 위촉

- (3단계) 연장신청 및 심사

- 필요 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연장)」발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연장 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은 8주(56일)까지 작성 가능

* 예) 근로활동불가기간 20주(140일) : 최초 4주(28일) → 1차 연장 8주(56일) → 2차 연장 8주(56일)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개요

- (발급기관)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활동불가모형 대상 지역* 및 인근 소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 기관**

* 서울 종로구, 대구 달서구, 경기 부천시 ·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 홍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원주시

** 시범사업 지역 및 인근 소재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지역무관) 중 교육 이수 요건 등을 충족하여 공단에 참여 신청·등록을 마친 기관

- (발급주체)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병수당 필수 교육 이수 후 공단에 등록을 완료한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사·한의사

* 단, 정신신경계 질환(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 중 기질성 정신질환(F00~F09)은 정신 건강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전문의만 발급 가능

3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 제도 안내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 제도 안내, 의료기관에 홍보물 및 사전문답서 비치·안내

- 진단서 발급

-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OCS 연계 시 OCS 통해 진단서 작성·제출 가능

- 의무기록* 발급

-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관련된 질병·부상의 진료 내역(최근 1개월 이내)을 확인할 수 있는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등 발급

* 의무기록은 신청인(환자)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기타

-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개선 및 진단서·가이드라인 수정·보완 등을 위한 설문·인터뷰 등 협조

4 진단서 비용 등

- 진단서

- (비용) 20,000원

- (지원) (1단계 시범지역) 신청인(환자)이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납부하되, 상병수당 심사결정일수가 1일 이상 발생시 신청인(환자)에게 발급비용 지원

(2·3단계 시범지역) 신청인(환자)이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납부하되, 상병수당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지원

* 최초 진단서는 발급비용의 100%, 연장 진단서는 50%를 공단에서 신청인(환자)에게 지원

- 연구지원금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구지원금* 지급

* 시범사업 평가 및 의료인증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 참여 (사례 수집, 설문 및 인터뷰 등) 수당으로 한시적 지원
(예산 확보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기준) 의료기관별*로 진단서 발급 환자 1인당** 분기별 50,000원 지급

* 환자 1명이 A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서, B의료기관에서 연장진단서 발급 → A기관에 1번, B기관에 1번 지급

** 1분기동안 환자 1명이 A의료기관에서 진단서 2건 발급 → 1번 지급

-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로 연구지원금을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의료기관에 지급

* 예) 2024년 3분기(7~9월) 진단서 발급분: 2024년 10월 15일까지 지급

IV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등록

• 대상 기관

- 근로활동불가모형이 적용되는 시범사업 지역* 및 인근에 소재한 보건소·의원·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

* 서울 종로구, 대구 달서구, 경기 부천시 ·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 홍성군,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원주시

**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무관하며, 요양병원·치과는 제외

• 등록 요건

- 의료기관 소속 의사·한의사의 상병수당 관련 필수 교육 이수

- ▶ (교육과정) 상병수당 제도 개요 및 진단서 작성방법 등
- ▶ (이수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이버연수원(sblearn.nhis.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가능(자율)

-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진단서 작성·제출에 동의

• 등록 방법

- 교육 이수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상병수당>참여의료기관관리>상병수당시범사업참여의료기관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전산 제출

※ 상세한 작성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상단 '매뉴얼' 및 사이버연수원에서 확인 가능

요양기관정보마당 HOME FAQ 서식자료실 원격지원 프린트설정 시스템오류도우미 매뉴얼								
기본정보	코로나19	자격확인	산정특례	치료치료	금연치료	임신출산	의료급여	재난의료
		학과(국고)	표준모자	호스피스	채권현황	일치만성질환	요양병원	노인장기
연간지급	전체메뉴	다재약물	아동치과	장애인보조기기	보건의료인력	의약품협상	상병수당	급여자료제출 (시범)진료지원
상병수당		• 참여의료기관관리		•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		• 연구지원금		• 상병수당의료인증심사
		상병수당시범사업참여의료기관신청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발급		연구지원금지급통보서조회		상병수당의료인증심사조회
		신청내역조회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조회		연구지원금신청내역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요건 확인 후 승인 처리

• 등록 취소

- 참여의료기관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등록 취소 신청서」작성하여 공단으로 팩스(033-749-9607) 발송
-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기관에 등록하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등록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등록 취소 처리 가능

I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033-736-4255~8

V 최초 신청용 진단서 작성 방법

① 진단서 작성 가능 상병

- 질병·부상 유형과 관계없이 상병으로 인해 대기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작성 가능
 - 단, 최근 1개월 이내 객관적인 임상적 검사 또는 영상진단검사(예: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결과 또는 수술(시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임상적 검사 관련 참고사항

- 정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와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예시) 보험급여 적용 기준에 맞지 않아 비급여 처리된 MRI 검사 항목도 인정 가능
- 유의사항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별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명확한 판정과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가 필요한 질병·부상이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 상병이라는 의미임

• 상병수당 지원 제외 대상

-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등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 예) 시력교정술, 심미적 효과를 위한 양약수술 등
- 출산·분만 관련 진료건으로, 특별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 검사/영상진단검사 또는 수술(시술) 내역 없이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 ◉ 주상병이 R코드, Z코드*, (일부)U코드**인 경우 진단서 발급 불가
 - * (예외) Z52(기관 및 조직의 기증자)
 - ** U070, U22~32, U50~79 및 U95~98

② 사전문답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사전문답서

① 목적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작성을 위해 신청인(환자)의 직종, 직무의 내용 등 직업적 특성을 확인

② 작성 및 활용

- (안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서식 비치*,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가 진료 대기 중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 참여의료기관 등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의료기관 지정서 및 사전문답서 서식 등 송부

- (작성) 환자는 본인의 직업에 따라 사전문답서 작성

- (활용) 진료 시 사전문답서를 참고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 근로활동제약 부분을 작성하고, 작성 후 사전문답서는 환자에게 돌려줌

- (제출)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신청 시 직접 제출*

* (제출생략)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문답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의 직업분류코드 입력란에 'Z101' 입력

③ 서식 및 작성방법

항목	작성 방법
인적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준으로 기술
직업 및 주당 평균 근무시간	현재 직업 및 평균 근로시간 작성
출퇴근 수단	평소 주된 출퇴근수단에 해당하는 항목 선택 ①자동차 ②대중교통 ③기타
재택근무 가능 여부	재택근무가능 여부 선택
근무 형태	①상시주간 ②야간근무 중 평소 주된 근무형태로 작성
직업 분류 코드	'직업분류표'의 예시직업 중 본인의 주된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
주된 업무내용	주된 활동 위주로 작성(예: 물건 들기, 계단 오르기, 키보드 사용)
발생 경위	질병·부상 발생 또는 자각 시의 상황 기재

참고 | 사전문답서의 [직업분류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2016.6월 개정)』 연구 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하여 직종별 노동강도 및 특징, 신체부위별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직업분류표는 노동강도별 직종으로 분류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국내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하여 통계청에서 고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목적

-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신청인(환자)의 동의 필요

- 작성 및 활용

- (안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서식을 비치,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가 진료 대기 중 사전문답서와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 (보관) 동의서는 의료기관에서 5년간 보관

4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최초신청)

◆ 상세한 작성 방법은 <상병수당 사이버연수원(sblearn.nhis.or.kr)> 내 별도 교육 영상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상단 '매뉴얼' 통해 확인 가능

1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속

① 요양기관 로그인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접속 후 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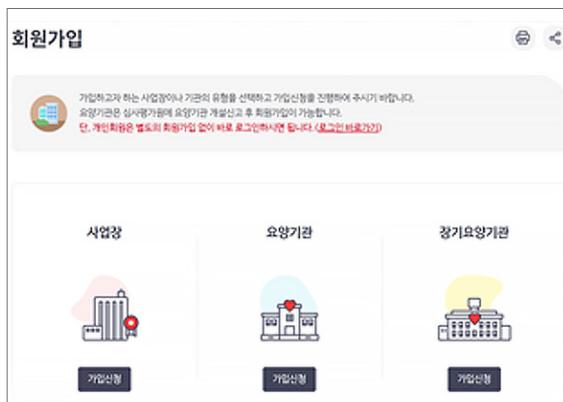
- 의료기관의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는 업무포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급여보장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

* 산정특례자 등록, 요양비 청구, 임신출산급여 지원자 등록 등

* 회원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의
“요양기관”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설신고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상병수당>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메뉴 접속

기본정보	코로나19	자격확인	신장특례	차과치료	금연치료	임신출산	의료급여	재난의료	간호간병
연간지급	전체메뉴	화려(국고)	표준모자	호스피스	채권현황	일차민성질환	요양병원	노인정기	장애인의료비
		디제약물	아동치과	장애인보조기기	보건의료인력	의약품합상	상병수당	급여자료제출	(시)법진료지원

상병수당



• 참여의료기관관리
- 상병수당시범사업참여의료기관신청
- 신청내역조회

•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
-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발급
-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조회

• 연구지원금
- 연구지원금지급통보서조회
- 연구지원금신청내역조회

• 상병수당의료인증심사
- 상병수당의료인증심사조회

② 진단서 작성 방법

• 진단서 이력 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회 <input type="checkbox"/> 임시저장 <input type="checkbox"/> 삭제			
조회 > 내용입력 > 임시저장 > 작성완료 > 제출 > 출력			
※ 필수 데이터를 모두 입력해야 '작성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유의사항) 신청인(환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동일한 근로활동불가기간 내에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는 없음 (진단서 발급 불가 시 아래와 같은 팝업 창 표출)

※ 기 발행된 진단서가 있습니다. [종료일-6] 2024.04.18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발행일	주상병	근로활동불가시작일	근로활동불가종료일
20240417	[■■■]	20240417	20240424

[닫기]

• 진단서 종류(최초·연장) 선택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최초'만 표출됨

- 신청인(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진단서 발급이력이 있더라도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

* 최초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의 7일 전부터 종료일의 익일까지 연장 진단서 발급 가능
(예)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7.3.~7.30. 인 경우, 7.24. ~ 7.31. 기간 내에만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 ▶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누르면 사전확인 메시지가 팝업으로 안내되며, '확인' 체크 후 '닫기' 버튼 클릭 시 진단서 작성 진행 가능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건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인

[닫기]

- 진단서 종류(최초 / 연장)이 표출되는 경우

- 신청인(환자)에게 진단서 발급 이력이 있으며, 연장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기간인 경우 '최초', '연장' 모두 표출되어 둘 중 선택 필요
- ▶ 사전확인 팝업 메시지에 '확인' 체크 후, 최초 신청과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 선택, 다른 상병으로 최초 진단서 발급 시 '최초' 선택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건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인

※ 기 발행된 진단서가 있습니다. 최초 혹은 연장 진단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주상병	근로활동불가시작일	근로활동불가종료일
20240417	S92	20240417	20240423

[기존상병]연장 진단서 발행

[타상병]최초 진단서 발행

• 인적사항 입력

인적사항

*성명	①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화번호	②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③	<input type="text"/> 우편번호	<input type="text"/>	

① (필수입력) 성명 및 주민번호

- 조회 시 입력한 정보 자동 표출

② (필수입력) 전화번호

③ 주소

• 질병·부상 관련 정보

상병정보			
*진단서등록번호 ①		*진단구분 ②	<input type="radio"/> 임상적 추정 <input type="radio"/> 최종진단
발병일자 ③	※ (YYYY.MM.DD.) 또는 (YYYY.MM.) 형태로 입력해 주세요.	*진단일자 ④	2024.04.17
*주상병 ⑤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input type="button" value="참고기간보기"/> ⑥		
※ F코드 상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작성 가능하며, 기질성정신질환(F00~09 등)에 한해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작성 가능합니다.			
부상병 1 ⑥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부상병 2 ⑦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주요증상 ⑧			
*발병(내원) 경위 ⑨ 근로활동 불가기간과 관련된 기저질환 또는 장애 ○ 유 ○ 무 ○ 알수없음 ⑩			

① (필수입력) 진단서 등록번호

- 임시저장 또는 저장 후 자동생성

② (필수입력) 진단구분 선택

③ 발병일자

- 질병이나 손상이 발생한 시점을 기재
-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연, 월 단위 기재 가능

④ (필수입력) 진단일자

- 기본 값은 작성일 현재이며, 이전 일자로 수정 가능

⑤ (필수입력) 주상병

- 근로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병·부상을 기재
- R코드, Z코드*, (일부)U코드** 상병은 주상병 기재 불가

* Z52(기관 및 조직의 기증자) 상병은 가능 ** U070, U22~32, U50~79 및 U95~98

- F코드(정신과 질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진단서 작성 가능
 - 단, 기질성 정신질환(F00~F09)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작성 가능 ...
- [참고자료 1]

-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병은 ⑥참고기간보기 버튼을 눌러 가이드라인 확인 가능

⑥ 부상병

-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상병을 최대 2개까지 기재 가능

⑦ (필수입력) 주요증상

- 상병으로 인하여 신청인(환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을 주로 기재

⑧ (필수입력) 발병(내원) 경위 * 신청인(환자)가 작성한 사전문답서 참조

- 근로활동불가를 일으킨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한 원인 및 과정을 기재

* 업무 중 부상 등 산업재해가 의심되는 경우 산재 요양급여신청 동시 권유 필요

⑨ (필수입력) 신청 상병의 경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질환, 장애 유무 기재

• 주요 치료내역 및 검사 (최근 1개월 이내)

주요 치료 내역 및 검사				
No	구분	일자	수술(시술) 또는 검사명	타기관여부
1	① 수술(시술) 수술(시술) 검사			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추가 <input type="checkbox"/> 행삭제 <input type="checkbox"/> 타기관여부
입원(퇴원)일자 ②		③ ~	<input type="radio"/> 입원중 <input type="radio"/> 퇴원	④ <input type="checkbox"/> 타기관여부
그 외 치료내역 ③				

① (필수입력) 수술(시술) 또는 검사

- 진단서를 작성한 상병과 관련하여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 시행된 수술(시술)명 또는 주요 검사명과 시행일자 기재
 - 신청인(환자)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수술/검사가 여러 건인 경우 ①행추가 통해 추가 입력 가능
 - 타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또는 검사기록을 기재한 경우* ②타기관란에 체크
- * 타 의료기관 의무기록지 등 확인 후 작성 필요

② 입원(퇴원)일자

- 진단서를 작성한 상병과 관련하여 1개월 내 입원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 기간 기재
 - 신청인(환자)은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시 해당 입원건 관련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함
 - 타 의료기관의 입원 이력을 기재한 경우* ③타기관여부란에 체크
- * 타 의료기관 의무기록지 등 확인 후 작성 필요

③ 그 외 치료내역

- 그 외 근로활동에 영향을 주는 치료내역이 있는 경우 기재
- * 예)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CAST 치료 등

• 향후 1개월간 치료계획

치료계획			※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① *치료계획	Ⓐ	Ⓑ	Ⓒ									
	□ 입원 □ 통원	약 () 일 약 () 일	□ 수술/시술 □ 항암/방사선 □ 보존/재활 □ 정신요법 □ 약물치료 □ 진단/검사 □ 기타									
※ 예정 수술(시술명) 또는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 기재												
② *치료계획소견												

① (필수입력) 향후 1개월간 치료계획

- 향후 1개월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 여부 체크
- Ⓑ란에는 예상되는 치료일수를 입력하며, 최대 31일까지 입력 가능
- Ⓒ치료내역은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

② (필수입력) 치료계획소견

- 주요 치료계획 및 내용에 대한 소견 기재
- 예정된 수술(시술)이 있는 경우 수술(시술)명을 기재

• 근로활동제약

근로활동제약												
*직종 ①	※ 사전문답서의 직업분류코드 (01~44, 91, A101~E110, Z101)를 입력해 주세요.				신체부위별 요구사항 ②							
*업무내용 ③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 제약 ④ ※ 1개 이상 표기	<input type="checkbox"/> 보행 <input type="checkbox"/> 중간이동 <input type="checkbox"/> 조그려앉기 <input type="checkbox"/> 물건 들고 옮기기 <input type="checkbox"/> 팔 뻗기 <input type="checkbox"/> 손놀림 <input type="checkbox"/> 정밀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이용 <input type="checkbox"/> 운전 <input type="checkbox"/> 일반식사 <input type="checkbox"/> 배변/배뇨 <input type="checkbox"/> 인지/판단 <input type="checkbox"/> 말하기·듣기 <input type="checkbox"/> 감염(격리) <input type="checkbox"/> 특정동작/자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로활동불가기간 ⑤ 2024.04.17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	()일간									

① (필수입력) 직종 ※ 신청인(환자)가 작성한 사전문답서 참조

- 신청인(환자)이 사전문답서에 기재한 '직업분류코드' 그대로 기재
- 신청인(환자)이 의식불명등의 사유로 사전문답서 작성이 불가한 경우 'Z101' 기재
- 이 경우 '신체부위별 요구사항'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문답서 작성 불가' 문구가 표출됨

② 신체부위별 요구사항

- ①에서 입력한 직업분류코드에 따라 자동 표출

③ (필수입력) 업무내용 ※ 신청인(환자)가 작성한 사전문답서 참조

- 사전문답서에 신청인(환자)이 기재한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기재

④ (필수입력) 신체기능제약 및 일상활동제약

- 상병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 활동 제약사항을 판단하여 1개 항목 이상 체크
- 일상활동제약 중 '감염(격리)'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증에 한하여 체크

⑤ (필수입력) 근로활동불가기간

- 최초 진단시 근로활동불가기간은 최대 4주(28일) 이내로 작성 가능
-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은 진단서 작성일 이전으로 소급 불가능함
- 진단서를 작성하려는 날짜가 7/4인 경우, 시작일자는 7/4 이전 일자로 선택 불가
- 신청인(환자)이 요청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 당일 기준 7일 후까지 작성 가능

* (예) 7일후 입원·수술이 예정된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을 해당일자로 기재 가능

• 소견

소견		※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 초과 시에만 작성
참고기간 초과에 대한 소견	①	

① 참고기간 초과에 대한 소견

- 배포된 질병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참고기간을 초과하는 근로활동불가기간을 기재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 예) 수술 부위 합병증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재수술 가능성 있는 경우
- 소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인(환자)이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발행정보

발행정보					
요양기관	주소	전문과목	전문의번호	발급일	
• 면허번호 ①	확인		②	2024.04.17	

① (필수입력) 면허번호

-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한의사의 면허번호를 입력

② 전문의번호

- 주상병이 정신신경계질환(F00~F99)인 경우 자동 표출

* 그 외 요양기관명 및 주소, 전문과목 등의 정보는 저장 시 자동 생성

③ 진단서 제출

• 진단서 원본 제출

- (제출주체)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 (제출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에서 전산 작성하며,
작성 페이지의 ‘제출’ 버튼 클릭 * OCS 연계 시 OCS를 통해 제출 가능
- (제출기한) 진단서 발급일 익일 이내

참고 | OCS와 요양기관정보마당 연계

| 개념

의료기관 내 진료시스템(OCS*, EMR**)과 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계모듈을 연동할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업무별 화면에 접속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함

* 처방전달시스템(Ordering Communication System)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 연계 필요성

- 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 OCS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서식을 직접 호출하여 작성 및 제출 가능, ② 1일 1회 인증서 로그인(연결시간 제한(-)), ③ 입력정보가 공단과 의료기관에 각각 저장되어 별도 기록할 필요없음
※ 요양기관정보마당은 ① 1회 로그인시 연결시간의 제한이 있음(20분) ② 입력정보가 의료기관 내 진료기록으로 저장되지 않아 별도 관리가 필요

| 개발지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해당 OCS 관리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연계 가이드 및 샘플 제공,
필요 시 OCS업체 개발기술 지원 가능

5 의무기록 발급

- 신청주체** 상병수당 신청인
- 신청방법** 의료기관에 직접 발급 신청, 발급비용은 신청인(환자)가 전액 부담
- 발급내용**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관련된 질병·부상의 진료내역(최근 1개월 이내)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항목		해당 의무기록	비고
필수	최초진료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최초)신청자 공통 제출
필수 ※ 해당 내역 제출	수술(시술)	수술(시술)기록지(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단서 기재사항 관련 의무기록 제출* (1개월 이내 수술(시술) 및 검사 관련)
	검사	검사기록지	
선택	입원	입퇴원기록지(진단명, 입원기간 포함)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선택적 제출

* (예) 진단서의 주요 치료 내역 및 검사에 혈액검사를 표기한 경우 제출 서류
→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해당 혈액검사의 검사결과지 제출

- 제출방법** 신청인이 상병수당 신청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VI 연장 신청용 진단서 작성 방법

1 발급 요건

• 대상자

-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에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

• 발급 가능 기간

- 직전에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 포함 7일 전부터 종료일의 익일까지 발급 가능

*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이 7.1~7.21. 까지인 경우 → 7.15일부터 7.22일까지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 상병 요건

-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상병 제한 요건* 충족 필요, 다만 임상/영상진단검사 또는 수술은 필수가 아님

* 미용 목적 성형, 분만·출산, R코드&Z코드&(일부)U코드 제외

- 추가로 다음 두 요건 중의 하나를 충족하여 연장 진단서의 주상병이 최초신청 진단서의 주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주상병의 KCD 3자리 code가 동일

② 최초신청 대상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1차적으로 진단서 작성의사·한의사의 판단으로 결정하며, 공단 본부 자문회의에서 해당 상병 여부를 최종 판정

• 발급 주체

-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

* 상병의 연속성 있는 관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초 진단서 발급 이후 상병의 증증도 및 예후 변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소견을 받기 위함

- 불가피하게 진료의사·한의사가 변경된 경우, 최초 진단서 내용 및 관련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연장 진단서 발급 필요

-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에 전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인(환자)이 「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함

* 동일 기관 내 진료의사·한의사 변경 시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원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서류는 없음

②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발급

- ◆ 상세한 작성 방법은 <상병수당 사이버연수원(sblearn.nhis.or.kr)> 내 별도 교육 영상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상단 ‘매뉴얼’ 통해 확인 가능

①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속 : 최초 진단서와 동일

② 진단서 작성방법

- 진단서 이력 조회

* (유의사항) 신청인(환자)이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동일한 근로활동불가기간 내에 최초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는 없음 (진단서 발급 불가 시 팝업으로 안내)

- 진단서 종류(최초·연장) 선택

- 진단서 종류(최초 / 연장)이 표출되는 경우
 - 신청인(환자)에게 진단서 발급이력이 있으며,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기간인 경우 ‘최초’, ‘연장’ 모두 표출되어 둘 중 선택 필요

- ▶ 사전확인 팝업 메시지에 ‘확인’ 체크 후,
최초 신청과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 선택, 다른 상병으로 최초 진단서 발급 시 ‘최초’ 선택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건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인

※ 기 발행된 진단서가 있습니다. 최초 혹은 연장 진단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주상병	근로활동불가시작일	근로활동불가종료일
20240417	S92	20240417	20240423

(기준상병)연장 진단서 발행

(타상병)최초 진단서 발행

-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이력이 있더라도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 연장진단서 발급 불가능
(기간 종료 후에는 최초진단서만 발급 가능)

- * 이전에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의 7일 전부터 종료일의 익일까지 연장 진단서 발급 가능
(예)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7.3.~7.30. 인 경우, 7.24. ~ 7.31. 기간 내에만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 상병정보

상병정보		*진단서등록번호	*진단구분	<input type="radio"/> 임상적 추정 <input type="radio"/> 최종진단
발병일자		※ (YYYY.MM.DD.) 또는 (YYYY.MM.) 형태로 입력해 주세요.	*진단일자 ①	2024.03.25
*주상병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input type="button" value="참고기간보기"/>	※ F코드 상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작성 가능하며, 기질성정신질환(F00~09 등)에 한해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작성 가능합니다.	
부상병1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부상병2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연장사유 ②				
*주요증상				

① (자동표출) 진단일자

- 이전 상병수당 신청용 최초 진단서에 입력하였던 일자가 자동 입력됨

② (필수입력) 연장사유

- 최초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질병의 상태나 경과로 보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외 항목은 최초진단서와 작성 방식 동일

• 주요 치료내역 및 검사

주요 치료 내역 및 검사					
No	구분	일자	수술(시술) 또는 검사명	타기관여부	
①				<input type="checkbox"/> 행추가 <input type="checkbox"/> 행삭제	
입원(퇴원)일자 ②	<input type="button" value=" "/> ~ <input type="button" value=" "/>	<input type="radio"/> 입원종 <input type="radio"/> 퇴원		<input type="checkbox"/> 타기관여부	
그 외 치료내역 ③					

- 이전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시행한 **①**수술(시술) 또는 검사 내용을 입력
- 수술(시술) 또는 검사가 여러 건인 경우 **②**행추가 통해 추가 입력 가능
- 연장진단서의 경우 **①**수술(시술)/검사, **②**입원내역 **③**그 외 치료내역 중 한가지만 입력하면 진단서 발행 가능

• 근로활동제약 및 확인

근로활동제약					
• 직종 ①	C202	※ 사전문답서의 직업분류코드 (01~44, 91, A101~E110, Z101)를 입력해 주세요.			신체부위별 요구사항 언어 능력 및 상지 사용 능력이 요구될 머리 사용이 높음 노동강도: 중간
• 업무내용 ②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 제약 ③ ※ 1개 이상 표기	<input type="checkbox"/> 보행 <input type="checkbox"/> 충간이동 <input type="checkbox"/> 쪼그려앉기 <input type="checkbox"/> 물건 들고 옮기기 <input type="checkbox"/> 팔 뻗기 <input type="checkbox"/> 손놀림 <input type="checkbox"/> 정밀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이용 <input type="checkbox"/> 운전 <input type="checkbox"/> 일반식사 <input type="checkbox"/> 배변/배뇨 <input type="checkbox"/> 인자/판단 <input type="checkbox"/> 말하기·듣기 <input type="checkbox"/> 감염(격리) <input type="checkbox"/> 특정동작/자세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이전 근로활동불가기간 ④	2024.03.27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 2024.04.23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28)일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⑤	2024.04.24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일간			
확인 전원 의료기관 확인란 ⑥ <input type="checkbox"/> 이전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최초·연장)를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전원 전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진단서 발급기관이 변경된 경우만 표기					

①② (자동표출) 직종·신체부위별 요구사항·업무내용

- 상병수당 신청용 최초 진단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이 자동 표출됨

* 사전문답서는 최초 진단서 작성시에만 작성

③ (필수입력) 신체기능제약 및 일상활동제약

- 연장 진단서 작성일 기준으로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 제약을 판단하여 작성

④ (자동표출) 이전 근로활동불가기간

- 상병수당 신청용 최초 진단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이 자동 표출됨

⑤ (필수입력) 연장 근로활동불가기간

- 연장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시작일자는 이전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자동 설정됨

- 연장 근로활동불가기간은 최대 8주(56)일까지 입력 가능하며, 실제 8주(56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음

→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기간* 중 병원에 방문하여

다시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 연장진단서 발급 가능 기간: 이전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 포함 7일 전부터

이전 근로활동불가 종료일의 다음날(=연장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시작일)까지 작성 가능

(예)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이 7/4(월) ~ 7/31(일) 일 경우,

· 연장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 8/1(월)

· 연장진단서 작성 가능 기간: 7/25(월) ~ 8/1(월)

⑥ 전원 의료기관 확인란

- 상병수당 최초 진단서를 작성한 기관이 아닐 경우, 해당 사항을 체크

③ 진단서 제출

- 진단서 원본 제출

- (제출주체)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 (제출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에서 전산 작성하여, 작성 페이지의 ‘제출’ 버튼 클릭
 - * OCS 연계 시 OCS를 통해 제출 가능
- (제출기한) 진단서 발급일 익일 이내

④ 의무기록 발급

- **신청주체** 상병수당 신청인
- **신청방법** 의료기관에 직접 발급 신청, 발급비용은 신청인(환자)가 전액 부담
- **발급내용** 최초진단서 발급 이후에 진행된 검사·수술·치료 내역 등에 대한 의무기록지 필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입원한 경우	입·퇴원기록지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등
임상적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검사기록지 등
입원/수술/검사 없이 외래진료만 한 경우	통원치료확인서, 진료내역 등

- **제출방법** 신청인이 상병수당 신청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VII 질병별 가이드라인 개요

① 필요성

- 의료인증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을 결정하는 핵심절차

- 근로활동 불가기간은 국내 새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치료기간을 산정하는 상해진단이나, 영구적 기능 상실을 다루는 장애진단과는 다름

질병가이드라인은 진단서 발급 의사·한의사가 다양한 질병과 업무에 대하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참고자료임

② 개발과정 및 활용

-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연구 과정 중에 있는 ‘시범사업용’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및 대상 질병을 추가할 예정
- 의사·한의사는 환자(신청인)의 연령, 일반적인 건강상태, 임상적 요인, 직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활동불가기간을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상병수당 지급 결정은 공단에서 수행

③ 가이드라인 구성 및 현황

① 질병명(관용명)

- 대한의학회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명칭과 임상 환경에서 흔히 부르는 질병 명칭

② 분류기호

- 제8차 한국질병분류코드 적용, 소수점 첫째 자리에 해당하는 세분류까지 목록화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 검색 및 조회 가능

③ 질병 설명

- 질병에 대한 의학적 설명으로 진단서 작성 시 참고

④ 환자 평가

- 일반적으로 해당 질병이 발생한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⑤ 치료법

- 수술 등 환자에게 필요한 임상적 개입(치료)의 종류

⑥ 임상적 요인

- 상병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요인(기저질환, 임상증상 유무 등), 인구학적 요인 등

* 가이드라인 파일 별도 배포(사이버연수원 필수교육 수강 완료 시 다운로드 가능)

⑦ 직업성 요인

- 사전문답서에 제시되어있는 직종 분류를 참고하고 노출기간, 강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근로자/낮음/중간/높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
-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 직업적 요인에 따라 상병수당 적용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⑧ 기준 근로자

- 해당 상병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적어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가상의 환자 (Reference)
 - 상병 발생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임상적 경과가 양호하고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업무로 인한 질병 악화 가능성성이 매우 낮은 근로자
- * 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직무가 없는 40대 근로자

⑨ 근로활동 불가 참고기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해당 상병의 근로활동 불가 참고기간을 산정하여 제시
- 진단서 작성 의사·한의사는 참고기간과 함께 환자(신청인)의 연령, 일반적인 건강상태, 임상적 요인, 직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기재

가이드라인 공개 상병

1. 내과계 질병

- A. 내분비계 질병 :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증독증
- B. 호흡기계 질병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병, 폐렴,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상기도염
- C. 심장 및 혈관 질병 :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 말초혈관 질환, 정맥 질환

2. 소화기계 질병

- A. 위장관 질병 : 상부 위장관 염증 및 궤양,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급성 충수염, 염증성 장질병
- B. 간담췌 질병 : 알코올성 간질병, 간경변, 독성 간염, 급성 담낭염 및 담석 질병, 급성 췌장염
- C. 기타 소화기계 질병 : 치핵, 탈장

3. 비내과계 질병

- A. 이비인후과 질병 : 알레르기성 비염, 부비동염 및 만성 부비동염, 편도선염, 인두염, 편도주위염, 외이도염, 중이염, 이석증 및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증, 메니에르병, 돌발성난청
- B. 비뇨생식계 질병 : 골반내염증, 자궁내막증, 자궁근증, 양성난소증괴, 자궁내막선증증식증, 자궁내막선증증식증, 자궁경부 이형성증, 급성 신우신염, 요로결석
- C. 기타 비내과계 질병 : 기흉

4. 근골격계 질병

- A. 어깨 및 팔꿈치 질병 : 어깨와 어깨관절 문제, 외측 및 내측 상과염
- B. 손 및 손목 질병 : 방아쇠수지, 손목터널증후군, 요골붓돌기힘줄운동막염
- C. 무릎 및 고관절 질병 : 무릎관절증, 무릎의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무릎의 전후십자인대의 파열, 반달연골의 찢김,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원발성 고관절증
- D. 발 및 발목 질병 : 발가락의 변형,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발목·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아킬레스힘줄염, 발바닥근막섬유종증, 지간신경증,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 E. 척추질병 :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골절 및 탈구

5. 손상

- A. 상하지 손상 : 상지 손상, 하지 손상
- B. 복부 및 흉부 손상 : 복벽·상부·하부 위장관 손상, 간담췌 외상, 흉부 손상
- C. 기타 손상 : 귀 및 주변부 외상, 코 및 주변부 외상, 콩팥 손상, 요관·방광·요도 손상, 음경·고환·음낭 손상

6. 암 질병

- A. 흔한 암 질병 :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 B. 소화기계 암 질병 : 위암, 대장암, 간암, 담낭암 및 담도암, 췌장암
- C. 비뇨생식계 암 질병 :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7. 신경계 질병

- A. 뇌혈관 질병 : 뇌경색증, 뇌출혈
- B. 만성 신경계 질병 : 파킨슨병, 뇌전증
- C. 기타 신경계 질병 : 두통 및 삼차신경통, 벨마비

8. 정신 질환

주요우울장애 및 재발성우울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급성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참고자료 목록

참고 1 | 기질성 정신질환 목록

출처: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2023, 보건복지부)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1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F00.0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3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4	F00.2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5	F00.9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6	F01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7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8	F01.1	다발-경색치매
9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
10	F01.3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11	F01.8	기타 혈관성 치매
12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13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14	F02.0	피크병에서의 치매
15	F02.1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
16	F02.2	헌팅تون병에서의 치매
17	F02.3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18	F0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19	F02.8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20	F03	상세불명의 치매
21	F04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22	F05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23	F05.0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
24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25	F05.8	기타 섬망
26	F05.9	상세불명의 섬망
27	F06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28	F06.0	기질성 환각증
29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
30	F06.2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 장애
31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32	F06.4	기질성 불안장애
33	F06.5	기질성 해리장애
34	F06.6	기질성 정서불안정[무력성]장애
35	F06.7	경도 인지장애
36	F06.8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명시된 정신장애
37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38	F07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39	F07.0	기질성 인격장애
40	F07.1	뇌염후증후군
41	F07.2	뇌진탕후증후군
42	F07.8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인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43	F07.9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인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44	F09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참고 2 |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환자 본인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7.1.>

- 사전문답서는 진료가 끝난 후 반드시 회수하여 상병수당 신청 시에 필수 의무기록지* 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의무기록지 : ①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검사 또는 수술(시술)에 대한 기록지 (필요 시 선택적으로 입퇴원기록지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는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앞쪽)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당 평균 근무시간	약 _____시간
출퇴근수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input type="checkbox"/> 기타 ()	택근무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근무형태	<input type="checkbox"/> 상시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근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업분류 코드	<p>[작성방법]</p> <p>1. 뒤쪽의 직업분류 및 예시 직업란을 보고 해당되는 본인의 직업코드를 작성합니다.</p> <p>2. 직업분류는 활동 기준에 따라 나누어 있으며 알고 있는 분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직업 중 업무내용이 가장 유사한 업종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p>3. 직업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p>		
주된 업무내용	※ 활동위주로 작성합니다. (예시: 물건 들기, 계단 오르기, 키보드 사용)		
질병 또는 부상 발생경위	※ (예시1) 심한 두통으로 인해 병원 내원, 검사를 통해 뇌출혈 진단 (예시2) 공장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부상		

유의사항

- 사전문답서는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 의사·한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업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식입니다. 진료 전에 사전문답서를 작성하여 의사·한의사에게 제시하고, 진료가 끝나면 반드시 회수하여 상병수당 지급신청 시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근로활동불가기간 안에는 한 장의 진단서만 발급 가능하며, 연장진단서 발급요청은 근로활동불가 종료일 7일 이전부터 종료일의 익일까지 가능합니다. * 진단서 중복 발급 불가
- 직종표기 및 작성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상병수당운영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직업분류	예시 직업(직업코드)
전문사무	경영컨설턴트(A101), 관리자(A102), 교장(A103), 노무사(A104), 대표이사(A105), 바둑기사(A106), 번역가(A107), 변호사(A108), 세무사(A109), 정책연구원(A110), 판사(A111), 편집자(A112), 회계사(A113)
연구·관리	감정평가사(B101), 건축가(B102), 공학기술자(B103), 광고문 작성가(B104), 모니터요원(B105), 손해사정사(B106), 영양사(B107), 위생사(B108), 작가(B109), 평론가(B110), 프로그래머(B111)
기술·현장	가스검침원(B201), 각종판매원(B202), 건설·광업·전기관리자(B203), 기술감독(B204), 대리운전원(B205), 매니저(B206), 방문판매원(B207), 부동산중개인(B208), 사진가(B209), 산업안전원(B210), 식품등급원(B211), 영업원(B212), 인테리어디자이너(B213), 주차단속원(B214), 측량기사(B215), 큐레이터(B216), 토목설계기술자(B217), 학습지교사(B218), 환경검사원(B219)
정밀작업	감별사(B301), 공예사(B302), 디자이너(B303), 마술사(B304), 속기사(B305), 안경사(B306), 약사(B307), 연주가(B308), 의사(B309), 작곡가(B310), 재단사(B311), 조율사(B312), 치과위생사(B313), 프로게이머(B314), 화가(B315)
사무·관리	검표원(B401), 경비원(B402), 녹화 및 편집기사(B403), 매장계산원(B404), 보험심사원(B405), 비서(B406), 사무원(B407), 승차권판매원(B408), 의무기록사(B409), 주차안내원(B410)
교육·서비스	가수(B501), 강사(B502), 관리사(B503), 교사(B504), 교수(B505), 기자(B506), 메이크업아티스트(B507), 미용사(B508), 보건교사(B509), 상담가(B510), 성우(B511), 성직자(B512), 아나운서(B513), 언어·음악·미술치료사(B514), 영양교사(B515), 예식보조(B516), 예체능교수(B517), 유치원원장(B518), 장례지도사(B519), 전화상담원(B520), 증권중개인(B521), 직무훈련강사(B522), 칼럼니스트(B523), 텔레마케터(B524), 특수교사(B525)
문화·여가	관광·통역안내원(C101), 놀이동산캐스트(C102), 모델(C103), 배우(C104), 서빙(C105), 웨딩플래너(C106), 캐디(C107), 항공기승무원(C108), 행사사회자(C109), 호텔서비스원(C110)
의료·기타서비스	간병인(C201), 간호사(C202), 간호조무사(C203), 목욕관리사(C204), 물리치료사(C205), 바리스타(C206), 방사선사(C207), 세탁원(C208), 식품제조종사원(C209), 안마사(C210), 육아보조원(C211), 제빵 및 제과원(C212), 조리사(C213), 주방장(C214), 청소원(C215)
조립·제조	(자동차)정비원(C301), 가구수리원(C302), 공장내 각종기계조작원(C303), 금형원(C304), 기기설치 및 수리원(C305), 단순제조종사원(C306), 상표부착원(C307), 수선사(C308), 용접원(C309), 인쇄업(C310), 전기장비조립원(C311), 제화원(C312), 조명기사(C313), 주형원(C314), 통신장비기사(C315)
교통·수송	건설기계운전사(C401), 대중교통운전사(C402), 배달원(C403), 비행기조종사(C404), 선장(C405), 지게차운전사(C406), 철도기관사(C407), 철도신호·수송원(C408), 택배원(C409), 항해사(C410), 헬리콥터조종사(C411)
건설·기능	경호 및 보안관련 종사원(C501), 교도관(C502), 내장목공(C503), 도배공(C504), 도장공(C505), 미장공(C506), 안무가(C507), 전기원(C508), 집행관(C509), 케이블접속원(C510), 코치(C511)
가공·하역	광업단순종사원(D101), 금속주입원(D102), 단조원(D103), 도축원(D104), 목형원(D105), 쓰레기수거원(D106), 정육원(D107), 하역 및 적재관련 단순종사원(D108)
기계·정비	(대형)기계설치정비원(D201), 객화차정비원(D202), 건물외벽청결원(D203), 건물해체원(D204), 건설단순종사원(D205), 건축석공(D206), 배관공(D207), 선박조립원(D208), 엘리베이터 정비원(D209), 외장목공(D210), 채석원(D211), 철근공(D212), 철로보수원(D213)
보안·체육	경기감독(D301), 경찰관(D302), 구급요원(D303), 스포츠강사(D304), 심판(D305), 트레이너(D306)
농축수산	농부(D401), 산불감시원(D402), 선원(D403), 양식원(D404), 조경원(D405), 축산사육자(D406)
활동	광원(E101), 무용가(E102), 별목원(E103), 소방관(E104), 어부(E105), 운동선수(E106), 응원단원(E107), 이삿짐운반원(E108), 잠수기능원(E109), 해녀(E110)
기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문답서 작성불가(Z101)

참고 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예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여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사유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의 건강정보(병명, 질병분류기호,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 주요증상, 발병(내원)경위, 기저질환 또는 장애유무, 주요치료내역, 향후치료계획,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제약, 근로활동불가기간)	상병수당 지급신청, 심사 및 급여지급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1항 13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 작성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직종 및 업무내용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병수당 신청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 1577-1000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상병수당 지급일수 심사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종, 업무내용,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의 건강정보(병명, 질병분류번호,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 주요증상, 발병(내원)경위, 기저질환 또는 장애유무, 주요치료내역, 향후치료계획,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제약, 근로활동불가기간)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⑤ 귀하는 본 건 상병수당 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병수당 신청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卷之三

본인 설정

(서명 또는 인)

0000의료기관 귀중

참고 4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최초)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7.1.>

<사전확인 팝업메세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적용건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인' → 확인 후 진단서 작성페이지로 이동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최초)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병명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주 질병 · 부상) (부 질병 · 부상)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주요증상					
발병(내원) 경위	근로활동불가기간과 관련된 기저(기준)질환 또는 장애 [] 유 [] 무 [] 알수없음				
주요 치료내역 및 검사 ※ 근로활동불가를 일으키는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내역 기재 ※ 수술 또는 검사 내역은 필수 기재	필수	수술(시술)	일자	수술(시술) 또는 검사명	
		검사		[] 타 기관 [] 타 기관 [] 타 기관 [] 타 기관	
	입원 [] 입원 중 [] 퇴원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타 기관	
		그 외 치료내역			
향후 1개월간 치료계획 ※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 입원 약 ()일	[] 수술/시술 [] 약물치료	[] 항암/방사선 [] 진단/검사	[] 보존/재활 [] 기타 ()	
	[] 통원 약 ()일	[] 수술/시술 [] 약물치료	[] 항암/방사선 [] 진단/검사	[] 보존/재활 [] 정신요법 [] 기타 ()	
	※ 예정 수술(시술명) 또는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 기재				
근로 활동 제약	직종	직종코드	* 사전문답서 참조하여 기재	신체부위별 요구사항	* 직종 코드 입력 시 자동 표출
	업무내용	※ 사전문답서에 환자가 기술한 업무내용 기재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제약 ※ 해당 사항에 1개 이상 체크	[] 보행	[] 총간이동	[] 쪼그려앉기	[] 물건 들고 옮기기
		[] 팔 뻗기	[] 손놀림	[] 정밀작업	[] 기타 ()
		[] 대중교통 이용	[] 운전	[] 일반식사	[] 배변/배뇨
		[] 인지/판단	[] 말하기 · 듣기	[] 감염(격리)	
[] 특정동작/자세			[] 기타	()	
근로활동 불가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일간		

(뒤쪽)

참고기간 초과에

대한 소견

※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
초과 시에만 작성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전문의번호 과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환자가 업무 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때 작성합니다.
2.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3. '최초'는 해당 상병으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불능을 야기하지 않는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4.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5.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체크(√)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수의 상병일 경우에는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상병을 기준으로 하되, 복수의 상병이 모두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최대 3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6. '발병연월일'은 질병 및 손상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년, 월 단위로 기재 가능합니다.
7. '주요증상'란에는 상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을 주로 기재 합니다.
8. '발병(내원) 경위'란에는 근로활동불가기관 관련 질병 · 부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원인 및 과정(기저질환 관련 여부 포함)을 기재합니다.
9. '주요 치료내역 및 검사'란에는 근로활동불가를 일으키는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내역 기재 합니다. 주요 '수술(시술)' 또는 '검사'는 하나 이상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 합니다. 입·퇴원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 외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작성이 필요한 경우 기재 합니다.
10. '향후 1개월간 치료계획'란에는 '방법'과 '사유'에 계획된 사항을 모두 체크(√) 표시합니다. 치료기간의 예상기간도 기재합니다. 수술(시술)이 계획 된 경우 계획된 수술 명을 소견 작성란에 기재합니다. 그 외 주요 치료 계획을 소견 작성란에 기재합니다.
11. 환자의 직종 및 업무내용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를 확인하여 직종코드를 표기하고, 표출되는 신체부위별 요구사항 내용을 확인 후 환자가 작성한 업무내용과 대조하여 추가작성이 필요한 부분을 업무내용 란에 기재 합니다.
12. '업무 내용'란에는 환자가 사전문답서에 작성한 업무 내용 중 상병과 관련한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며, 잘 모르는 현장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들리는 대로 작성 바랍니다.
13.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제약'은 상병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 활동 제약사항을 판단하여 한 개 이상 체크(√) 표시 합니다.
14. '근로활동불가기간'은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서 '최초' 발급 시 최대 4주를 초과하여 작성 할 수 없습니다.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서 작성일(발급일)로 하며, 필요 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 날짜로 작성 가능합니다. 질환별 가이드라인의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질환별 가이드라인의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 초과에 대한 소견'란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16. 정신신경계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환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번호를 기재합니다. * 기질성 정신질환 : F00 ~ F09 중 일부 질환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참고 5 | 상병수당 전원 신청서(환자 본인 작성)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4.7.1.>

상병수당 전원 신청서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소재지			
전원요양일자			년 월 일
변경 사유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	<input type="checkbox"/> 수술 또는 전문적인 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근거지 요양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 후 의료기관 확인 서류	<input type="checkbox"/> 이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최초/연장) <input type="checkbox"/> 이전 의료기관 의무기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 및 제출 방법

- 상병수당 신청기간을 초과하는 근로활동불가기간이 발생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는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료를 받는 의사·한의사가 불가피하게 변경된 경우 '상병수당 전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전원하거나, 병·의원급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상병수당 전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전원요양일자는 변경 후의 의료기관에 처음으로 내원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연장신청시 신청인은 반드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최초)' 및 질병의 경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전 기관의 의무기록을 연장 진단서 작성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변경 후 의료기관 확인 서류 란에 체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참고 6 |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4.7.1.>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연장)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앞쪽)	
환자의 주소					
병명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부 질병·부상)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연장사유					
주요증상					
주요 치료내역 및 검사 ※근로활동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이전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내역 기재 ※①~④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필수 기재	구분	일자	수술(시술) 또는 검사명		
	①수술(시술)		[] 타 기관		
	②검사		[] 타 기관		
	③입원 [] 입원 중 [] 퇴원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타 기관		
	④그 외 치료내역				
향후 1개월간 치료계획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	[] 입원 약 ()일	[] 수술/시술 [] 약물치료	[] 보존/재활 [] 진단/검사	[] 정신요법 [] 기타 ()	
	[] 통원 약 ()일	[] 수술/시술 [] 약물치료	[] 보존/재활 [] 진단/검사	[] 정신요법 [] 항암/방사선 [] 기타 ()	
	※ 예정 수술(시술명) 또는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 기재				
근로 활동 제약 ※ 해당 사항에 1개이상 체크	직종	직종코드	신체부위별 요구사항		
	업무내용	※ 사전문답서에 환자가 기술한 업무내용 기재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제약 ※ 해당 사항에 1개이상 체크	[] 보행 [] 팔 뻗기 [] 대중교통 이용 [] 인지/판단 [] 특정동작/자세	[] 층간이동 [] 손놀림 [] 운전 [] 말하기·듣기 [] 기타 ()	[] 쪼그려앉기 [] 정밀작업 [] 일반식사 [] 감염(격리) [] 기타 ()	[] 물건 들고 옮기기 [] 기타 () [] 배변/배뇨 [] 기타 ()
	이전 근로활동 불가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일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일간	

(뒤쪽)

전원 의료기관 확인란

[] 이전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최초·연장)를 확인하였습니다.
[] 전원 전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

의료기관 명칭:

주소:

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전문의번호 과 제 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환자가 업무 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때 작성합니다.
 - '연장'은 해당 상병으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연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치료자체가 근로불능을 야기하지 않는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질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체크(√)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수의 상병일 경우에는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상병을 기준으로 하되, 복수의 상병이 모두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모두를 기재합니다.
 - '연장시유'란에는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연장된 시유를 기재합니다.
 - '주요증상'란에는 상병으로 인하여 환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을 주로 기재 합니다.
 - '주요 치료내역 및 검사'란에는 근로활동불가를 일으키는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내역 기재합니다. ① 주요 '수술(시술)' 또는 ② 검사, ③ 입·퇴원내역, ④ 그외 치료 내역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기재 합니다.
 - '향후 1개월간 치료계획'란에는 '방법'과 '시유'에 계획된 사항을 모두 체크(√) 표시합니다. 치료기간의 예상기간도 기재합니다. 수술(시술)이 계획된 경우 계획된 수술 명을 소견 작성란에 기재합니다. 그 외 주요 치료 계획을 소견 작성란에 기재합니다.
 - 환자의 직종 및 업무내용은 최초 신청시 작성한 내용이 자동으로 표출되나 업무가 변경된 경우 필요한 부분을 업무내용 란에 기재 합니다.
 - '신체기능 및 일상활동제약'은 상병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 활동 제약사항을 판단하여 한 개 이상 체크(√) 표시 합니다.
 - '근로활동불가기간'은 질병으로 인하여 기준에 하던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서 이전 진단서 발급시 권고한 인정 기간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은 이전 진단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전원 의료기관 확인란'은 이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 발급기관과 현재 발급기관이 다를 때 내용을 확인 후 체크(√) 표시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환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번호를 기재합니다. * 기질성 정신질환 : F00 ~ F09 중 일부 질환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033-736-4255~8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